

이번 호의 특집 주제인 ‘대학교수와 연구윤리’에 대한 참고 자료로 한국행정학회 윤리헌장, 한국행정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표절규정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전문을 게재한다.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윤리헌장

한국행정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학회의 회장 차기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 운영규정 제5장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학회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학과 한국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행정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한국행정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전임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한다.
- ④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⑥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운영)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 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

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윤리현장 위반의 제소)

-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② 윤리현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① 윤리현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현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② 윤리현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05년 12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표절규정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행정학회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의 확정과 제재 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① 행정학회보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② 인터넷 행정학회보에서 논문 삭제
- ③ 행정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행정학회보에 표절 사실 공시
- ④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의 통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정 2006. 6. 16 규칙 제15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1조의3에 의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SNUCRI’로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

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가.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연구 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당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공저자가 되거나 제1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③ 제보자라 함은 진실하게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주장을 제기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 ④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⑤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⑥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대학원 연구생

을 말한다)와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자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④ 교내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교내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 ① 위원회는 부총장, 교무처장 및 연구처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처 연구지원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처장이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본조사위원회)

- ①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제보방법 및 증거보전)

- ① 제보자는 연구처장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 관여

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 조치를 건의한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한 제재 조치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5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 예비조사위원, 본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7조(교내 제보자 보호) 위원회는 교내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에 상당한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한다.

제18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2006. 6. 16, 규칙 제156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